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삼백돈 돈가츠] 정보공개서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 (봉천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883-322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883-322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883-322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더푸드랩 에프앤비 주식회사	삼백돈 돈가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봉천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 12. 30.	2021. 1. 28.	김종환, 임종현	02-883-3227	02-883-3228
	법인등록번호	110111-7733424	사업자등록번호	410-87-1076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종환	삼백돈돈가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봉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환, 임종현	02-883-3227	02-883-3228
대표이사	임종현	삼백돈돈가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봉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환, 임종현	02-883-3227	02-883-3228
감사	박차경	삼백돈돈가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봉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종환, 임종현	02-883-3227	02-883-322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삼백돈 돈가츠	삼백돈 돈가츠	2021. 4.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0길 48 1층(봉천동)	박차경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삼백돈 돈가츠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삼백돈 돈가츠	-
상 호	삼백돈 돈가츠 OO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170164333 출원일자 : 2017. 12. 21. 등록번호 : 4014162100000 등록일자 : 2018. 11. 13.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952,250	555,547	396,703	3,379,735	110,430	98,797
2022년	872,543	623,637	248,906	3,731,766	210,921	206,837
2021년	484,935	392,487	92,448	706,864	95,288	91,448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삼백돈 돈가츠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김종환	대표이사	2019. 6. ~ 2021. 4.	삼백돈돈가츠 사내이사	경영 총괄
		2021. 4. ~ 현재	더푸드랩에프앤비(주) 대표이사	
임종현	대표이사	2019. 6. ~ 2021. 4.	삼백돈돈가츠 사내이사	경영 총괄
		2021. 4. ~ 현재	더푸드랩에프앤비(주) 대표이사	
박차경	감사	2019. 6. ~ 2021. 4.	삼백돈돈가츠 대표이사	감사
		2021. 4. ~ 현재	더푸드랩에프앤비(주)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삼백돈 돈가츠] 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자 2017. 12. 21. 등록일자 2018. 11. 13.	출원번호 4020170164333 등록번호 4014162100000	김종환	2028. 11. 13.

- * 당사는 서비스표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는 해당 상표권 등록권리자(김종환 대표)로부터 2028년 11월 13일까지 상표권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삼백돈 돈가츠] 가맹사업 현황

1. 삼백돈 돈가츠를 시작한 날 : 2020년 1월 1일

(직영점 영업시작일 : 2019. 6. ~)

2. 삼백돈 돈가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삼백돈 돈가츠	삼백돈 돈가츠	박차경	2020. 1. 1. ~ 2021. 4.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0길 48, 1층 (봉천동)
더푸드랩 에프앤비 주식회사	삼백돈 돈가츠	김중환 임중현	2021. 4. 14. ~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51, 1층

3. 삼백돈 돈가츠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삼백돈 돈가츠	일식	돈가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1	2	20	15	5	19	15	4
서울	5	4	1	5	4	1	5	4	1
부산	-	-	-	0	0	0	0	0	0
대구	-	-	-	0	0	0	0	0	0
인천	-	-	-	0	0	0	0	0	0
광주	-	-	-	0	0	0	0	0	0

대전	-	-	-	1	1	0	1	1	0
울산	1	1	-	1	1	0	0	0	0
세종	-	-	-	0	0	0	0	0	0
경기	6	5	1	11	7	4	11	8	3
강원	-	-	-	0	0	0	0	0	0
충북	-	-	-	1	1	0	1	1	0
충남	1	1	-	1	1	0	1	1	0
전북	-	-	-	0	0	0	0	0	0
전남	-	-	-	0	0	0	0	0	0
경북	-	-	-	0	0	0	0	0	0
경남	-	-	-	0	0	0	0	0	0
제주	-	-	-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	6	-	-	-	11
2022	11	4	0	0	2	15
2023	15	2	0	2	0	15

*대표자변경으로 인해 2021년4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된 [샤로수길 본점]의 정보 갱신이 누락되어 직전 3개년도 가맹점 수가 수정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6. 삼백돈 돈가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전 3년간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김종환	삼백돈돈가츠 사내이사로 재직	2020. 1. ~2021. 4.	삼백돈돈가츠(등록번호: 20200248)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2021.4.~현재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임종현	삼백돈돈가츠 사내이사로 재직	2020. 1. ~2021. 4.	삼백돈돈가츠(등록번호: 20200248)이라는 영업표지의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2021.4.~현재	일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감사)	박차경	삼백돈돈가츠 대표이사로 재직	2020. 1. ~2021. 4.	삼백돈돈가츠(등록번호: 20200248)이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더푸드랩에프앤비 주식회사 감사	2021.4.~현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5	461,898	20,271	780,380	47,531	200,091	8,004	
서울	4	-	-	-	-	-	-	5점 미만
부산	0	-	-	-	-	-	-	
대구	0	-	-	-	-	-	-	
인천	0	-	-	-	-	-	-	
광주	0	-	-	-	-	-	-	
대전	1	-	-	-	-	-	-	5점 미만
울산	0	-	-	-	-	-	-	
세종	0	-	-	-	-	-	-	
경기	8	496,679	20,273	780,380	43,354	296,438	10,948	
강원	0	-	-	-	-	-	-	
충북	1	-	-	-	-	-	-	5점 미만
충남	1	-	-	-	-	-	-	5점 미만
전북	0	-	-	-	-	-	-	
전남	0	-	-	-	-	-	-	
경북	0	-	-	-	-	-	-	
경남	0	-	-	-	-	-	-	

제주	0	-	-	-	-	-	-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직영점으로 등록 되어있던 [샤로수길 본점]이 가맹점으로 명의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을 한 1개 가맹점(일산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5개가 아닌 실제 1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삼백돈돈가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5	72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23,398	23,398	-	(비공개)
광고	(비공개)	2023. 1. 1.	23,398	23,398	-	

		~ 2023. 12. 31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본점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형동1가, 우리은행 본점)	1588-5000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에스크로 -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esc.wooribank.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 및 인증한 후, “MY에스크로-가맹금예치신청”을 클릭한 다음 [삼백돈 돈가츠] 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주)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삼백돈 돈가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			
가입비	1. 가입비 및 영업표지 사용 대가	4,500	계약 체결 당일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시] ① 위약벌과 ② 인도된 제품 . 서비스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영업의 개시
	2. 점포선점·실사에 대한 대가	1,000			
	3. 자료제공 및 매뉴얼 제공 대가	5,500			
	소계	11,000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5,5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해당 없음	계속가맹금의 미지급,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합계	19,500
가입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미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20평, 66㎡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부공사)	(비공개)	40,000	2,000	- 계약시: 70 % - 중도금: 20 % - 완료시: 10 %	공사 전 계약취소	부가세 별도
주방 설비 및 집기	(비공개)	32,000	/	- 계약시: 100%	입고 후 계약취소	
외부간판 및 내부싸인 인쇄물	(비공개)	7,500	/	- 주문시 100%	제작 후 계약취소	

가구	(비공개)	4,500	/	- 주문시 100%	입고 후 계약취소
출, 포장, 디자인 및 그 외 물품	가맹본부	6,000	/	- 주문시 100%	입고 후 계약취소
기타 초도물품	(비공개)	7,000	/	해당 없음	좌등
총계		97,000	4,850		

※ 별도 공사 항목 : 철거 공사, 주방 후드, 전기 증설, 가스 공사, 수도 배관, 화장실, 음향, 소방, 냉난방, 외부 공사(어닝, 데크 등), CCTV&보안 공사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의 경우 합리적인 비용 및 [삼백돈돈가츠]의 가맹사업 컨셉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상기 지정된 협력업체 외에 새로이 협력업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지도(공사에 필요한 영업장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제공 등) 및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33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삼백돈돈가츠]의 컨셉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연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부가세 별도)

구분	내역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	-	-	-	-
정기납입금 (로열티)		가맹본부	전체매출액의 2% (VII.5 지원정책 기준에 따라 면제 될 수 있음)	/	소멸성	소멸성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교육 전	교육	교육실비 출
	특별 교육	가맹본부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개별 통지일	미실시	교육 실시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하여 결정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판촉활동 미실시	판촉활동 실시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될 수 있음		광고활동 미실시	광고활동 실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등	변경 내용 미이행	변경 후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등	교체/보수 미이행	교체/보수 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지급일까지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3년도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 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① 잔여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중 매뉴얼 / 자료제공 대가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합계	14,000	-

② 신규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입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합계	19,500	-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삼백돈 돈가츠]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②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삼백돈 돈가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삼백돈 돈가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삼백돈돈가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삼백돈 돈가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은 당사의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특등심 돈가츠			
안심 돈가츠			
등심 돈가츠			
치즈 돈가츠			
코돈부르			
카레 안심/등심 돈가츠 정식			
냉소바 안심/등심 돈가츠 정식			
우동 안심/등식 돈가츠 정식			
우동			
냉소바			
맥주/음료			
멘치가츠			
냉소바 멘치가츠 정식			
우동 멘치가츠 정식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	-----------	--------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삼백돈 돈가츠	16,000	변경시 서면 통지	2023. 4월 기준
특등심 돈가츠	16,000		
안심 돈가츠	13,000		
등심 돈가츠	12,000		
치즈 돈가츠	13,000		
카레 안심/등심 돈가츠 정식	15,000/14,000		
냉소바 안심/등심 돈가츠 정식	15,000/14,000		
우동 안심/등식 돈가츠 정식	15,000/14,000		
멘치가츠	3,500		
냉소바 멘치가츠 정식	13,000		
우동 멘치가츠 정식	13,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삼백돈 돈가츠에서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일식류의 외식업	삼백돈 돈가츠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

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삼백돈 돈가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삼백돈 돈가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4%	2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삼백돈 돈가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5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p>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백돈 돈가츠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25조1항(1호)
가맹점사업자가 수시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25조1항(2호)
가맹점사업자가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25조1항(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25조1항(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25조1항(5호)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5조1항(6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에 반영을 위해 문의하는 총매출액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25조1항(7호)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5조1항(8호)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조1항(9호)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상품·서비스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5조1항(10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5조1항(11호)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분담 및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25조1항(12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 운영권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5조1항(1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25조1항(14호)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가맹점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5조1항(15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6조1항(2호)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 품질기준 준수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36조1항(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36조1항(4호)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6조1항(5호)

36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6조1항(6호)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6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6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②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④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을 후 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희망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법적효력 발생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삼백돈 돈가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삼백돈 돈가츠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일식류 외식업	해당 없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삼백돈 돈가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 취급 여부, 상품 정돈 상태, 서비스 제공 실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액, 연 매출액의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 지도, 관리, 감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인은 본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가맹점 관리표(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삼백돈 돈가츠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 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① 행사계획 공고→ ② 가맹점부담액 제시 → ③ 가맹점의 행사 참여 여부 결정 → ④ 행사 시행 → ⑤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 업자의 70%이 상의 동의시 전 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 동적 (2019년 자료 없음)	상동	상동	상동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삼백돈 돈가츠] 브랜드의 통일성 및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

퇴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 준수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가 본 계약에 의한 교육의 대가를 받고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수령 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가맹계약 상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각각 **금 이천만원 정(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당사의 과실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해**

지하거나, 점포 양도 등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금 이천만원 정(20,000,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귀하가 계약 후 개점 전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초기 가맹금에서 일정 부분을 상계처리 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 7) 양 당사자 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 8)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약 20일	-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 14일전) -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 14일전)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 14일전)		
면접	- 개점 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은행 예치계좌에 가맹금 예치	약 30일	19,500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미포함)
가맹점 입주건물 확정	- 입주계약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89,320
인테리어 공사	-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실시		
간판	- 간판 주문 및 설치		
주방설비 구입	- 주방설비 구매·입고		
초도물품	- 초도물품 구매·입고		
기타 싸인물	- 기타 싸인물 제작·입고		
인력 배치 / 교육 실시	- 영업 개시를 위한 인력 구인 - 사전 점포운영교육 실시		-

인허가 취득	- 가맹점 개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증명서 발급		
영업 준비	- POS 설치 / 카드승인 등 영업 전 제반 사항 점검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합계	-	50일 내외	108,820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및 개별사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 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소요금액은 점포임대 관련 비용, 건물 개. 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급·배기 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및 오디오 구입 비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㉔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ㄱ.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ㄴ.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ㄷ.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②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①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②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③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정기납입금 (로열티) 면제	직전 1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 기간	정기납입금 (로열티) 면제	별도 제한 조건 확인 필요

*지원정책의 제한 내용 및 조건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대금의무(식사재 및 물품대금 등)를 불이행 할 경우 경영 지원 정책에 대한 제한 사유 및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매출 상승을 위한 본사의 매장 점검 후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매장 운영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지원 정책에 대한 제한사유 및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삼백돈 돈가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삼백돈 돈가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전 최초 교육	메뉴레시피 교육 가맹점운영교육	8시간 x 14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개점 후 교육	가맹점 운영 및 경영노하우 등	10시간 x 2일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비, 숙식비 등) 해당 금액 부과	
개점 후 보강 교육	추가 교육 및 운영 관리 추가 교육	10시간 x 1일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비, 숙식비 등) 해당 금액 부과	점주 요청 및 본사가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교육		10시간 x 1일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비, 숙식비 등) 해당 금액 부과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특별교육		10시간 x 1일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비, 숙식비 등) 해당 금액 부과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네이버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 5층
2	경기	이마트죽전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죽전점 지하1층
3	경기	동탄라크몽점	경기 화성시 송동 726-1 동탄 라크몽 1층
4	서울	역삼센터필드 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더 샵스 옛 센터필드 지하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9개월	2022년 3개 직영점 신규오픈 (네이버점, 이마트죽전점, 동탄라크몽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565,14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끝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2281-58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2021-202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제공일시	(작성 란):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 대표 _____ (인)

가맹희망자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